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위촉위원 임기 규정 보완(안 제4조제2항)

현행 법령은 고용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기 만료시 후임자 위촉 전까지의 직무수행 근거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후임위원 위촉이 바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위원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심의회의 운영 공백이 예상됨

이에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위원회 등 타 입법례와 같이, 고용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후임위원이 위촉되기 전까지 기존위원이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촉위원”을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직무계속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촉위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임기)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u>위촉위원</u> 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 -- <u>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u> ----- ---. ----- ---.
<신 설>	② <u>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u>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u>시행한다.</u> 제2조(위촉위원의 직무계속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촉위원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연 락 처	(044) 202 - 7230